

피를 나눈 중국동포를 보호하지 못할 망정 인권옹호단체까지 음해해선 안된다.

- 중국노동자협회 탄압에 관한 공대위 성명 -

금일(96. 7. 18) “불법체류외국인 조직 ‘중국노동자협회’ 적발”에 관한 법무부 발표는 충격적 이었다. 온갖 원색적인 표현(핵심전위 활동요원)을 써가며 ‘중국노동자협회’를 마치 범죄단체나 폭력조직 인양 몰아붙였다.

지금까지 ‘중국노동자협회’는 중국동포들이 한국내 체류하면서 당하는 각종 노동, 인권침해에 관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비록 고국 명이지만 온갖 차별대우를 감내하기 위하여 친목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또 같은 동포지만 임금체불, 팔, 다리가 잘려나가는 산재에도 한푼 보상도 없이 쫓아내는 조국 땅에서 스스로의 인권보호와 친목을 위하여 중국동포들은 “중국노동자협회”를 만든 것이다. 교포들은 한국내 체류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협회이름에 교포라는 문구를 제외하였을 정도로 세심하게 ‘차별’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동포들의 친목단체를 불법단체 운운하는 법무부는 동포들의 애타는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실 중국동포나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공익단체가 앞장서서 했어야 하는 동포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법무부는 송두리체 망각하고 대신 이 일을 수행하였던 ‘중국노동자협회’마저도 짓밟아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동포들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 고국산천을 등지고 눈물을 떨구며 떠났던 동포들에게 입국의 길을 열어주진 못할 망정 발길질로 쫓아내는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일 성남외국인노동자에집에 난입하여 치료를 요청하려온 네팔인 부부와 이를 말리던 김혜성 목사까지 연행하였던 법무부가 또다시 한달이 지난 7월 3일 ‘중국노동자협회’의 간부들을 연행한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의 중국노동자협회 간부들에 대한 집중단속은 정상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중국동포들의 인권보장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단속의 행위임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법무부의 표적단속은 매우 비열하고 부도덕한 만행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혜성 목사의 연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방문하였던 조사단에게 ‘인권은 중요한 것이다. 향후 인권보호단체에 대한 탄압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탄압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약속위반이며 인권유린 행위이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에 참가한 것을 ‘위법’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에 대한 몰염치한 탄압이라 할 수 있다. 동포들의 마지막 자구책인 ‘중국노동자협회’를 짓밟으며 의기양양하게 범죄단체를 색출한 듯이 소란을 피우는 법무부의 뻔뻔스러운 작태에 대하여 어떻의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즉각 관련자를 석방하고 동포들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인권 자료실		
등록번호	류기호	자료번호
WS	A 3-6	190

1996. 7. 18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촉구와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화: 744-9063 팩스: 745-9804

법무부 보도자료

145-1804

자료 문의	담당부서 공보관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체류심사과(504-7101~2) 503-7011~2 (FAX 504-5723)
----------	--------------	---

1996. 7.18(목)

제목 불법체류외국인 조직 「중국노동자협회」 적발

1. 조사착수경위

법무부는 최근 중국동포들이 불법단체를 결성하고 활동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이 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 2,000여명을 규합하여 소위 「중국노동자협회」를 결성하고 조직확대 및 불법집회에 가담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동 협회 회장 조영구(44세)등 협회 간부 30여명을 검거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7조, 동 제25조등 위반으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2. 사건개요

- 「중국노동자협회」 회장 조영구(44세)를 7.3 검거, 조사한 결과
- 조영구는 '93. 3. 친구 김윤화(44세)명의 중국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변조여권으로 불법입국, 건설현장 잡역부로 전전해오다
- '95. 3.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노동자 권익보호를 구실로 소위 「중국노동자협회」를 결성, 회장에 피선되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중국동포 2,000여명을 회원으로 규합하고

- 서울 용산구 납영동소재 사무실을 보증금 7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입대, 상근(월급 60만원)하면서 중국의 각 省 출신별로 3명의 부회장, 조직부장 1명, 총무 1명과 분회장 8명, 핵심전위 활동요원 16명등 조직책을 두고 월례회를 개최 조직결속을 도모하면서 향후 활동 방향등 대책을 논의하고
 -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월회비 5,000원씩과 회원 체불입금 해결사례비 1%를 공제, 재원을 확보하여 한·중무역 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또한 동협회는 국내 노동·인권단체의 지원확보를 위해
- 2.26 「민노총」 건설연맹과 자매결연식 개최, 결연패 상호교환, 연대활동 기도
 - 5. 1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관 세계 노동절행사에 참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 시위가담
 - 5.26 「외노협」 주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거리서명 운동 가남
 - 6.13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노동자 상담소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참가
 - 6.13 「외노협」 주관으로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김해성 목사 불법 연행 규탄 및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 대회"에 가담 하는중 대정부 협력단체화 기도

□ 조영구 검거에 이어 '96. 7. 6~13간 동 협회 핵심간부 29명을 검거,

조사한 결과

- 조직부장 허인철(45세), 분회장 전광일(35세)등 7명은 타인명의
변조여권을 500~600만원에 구입, 불법입국한 자이고
- 부회장 김정근(50세), 총무 정명근(31세)등 5명은 브로커들로부터
허위초청장을 구입, 불법입국하였고
- 핵심전위 활동요원 이두설(50세)·이태산(36세)등 2명은 밀입국,
분회장 안청룡(36세)등 2명은 산업연수생, 분회장 윤보록(48세)은
위상결혼, 부회장 강태근(47세)등 나머지 12명은 친척방문등으로
위장입국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건평가

- 미와 같이 불법체류자들을 규합하여 이를 조직화, 집단화하면서
세력확장을 기도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새로운 현상이며
- 특히 국내 노동·인권단체의 지원 확보를 위해 재야단체와 연계하여
연대활동(노동자보호법 서명운동등)을 자행하고, 특히 주모자 조영구
는 회비등에서 일정액의 보수를 월급으로 수령하면서 동협회에 상주
하였던 점이 특징으로
- 불법체류 양상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 대공협의점 조사

이들이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불법단체를 결성한 점을 중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대공용외점 부문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 대공협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5. 향후대책

이번 사건의 경우 대공협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위험성을 상존하므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들의 대공용외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한편,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대규모 조직화, 집단화 경향을 예의 주시하여 단체결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등 단속활동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하였다.